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9. 12. 18.

사회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9. 11. 26(목) ~ 2009. 12. 2(수)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 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 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래,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전문위원 사무직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9.11.26 ~ 2009.12. 1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주민생활지원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관리공단 포함)	
2009. 12.2	오전		감사결과 정리	
	오후		공개질의 및 답변	- 종합평가 - 강평

※ 토 ~ 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10년도 예산안 사전심사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부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09. 11.26 (목)	최미경	가설건축물 신고 시 용도를 '임시창고'로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점포'로 불법 용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음.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가설건축물 불법 용도 사용 행위가 시정되도록 행정 조치하고, 유사한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정비를 강화할 것.
2	2009. 11.26 (목)	송수희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있어 구청 내에 피의자 조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치심 또는 인권침해로 느낄 수 있음.	현재 서울시(영등포구) 특별사법경찰 전담반 내에 있는 별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 아울러, 특사경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
3	2009. 11.26 (목)	송수희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 일자리 정보 및 취업 기회 제공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층 등 고급인력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전문상담사의 경우 출장비·야근 식비 지급이 요구됨.	고급인력 실업자 구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수 구인업체 발굴을 활성화하고, 전문상담인력의 보강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4	2009. 11.26 (목)	송수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현재 7개월인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음. 또한 희망근로사업과 비교하여 인건비 격차가 큰 관계로 불만의 소지가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근무기간 연장 및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참여자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
5	2009. 11.26 (목)	송수희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심의회 전날 심지어 당일 전달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정상 불참한 위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가 소홀함.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는 심의위원별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미리 배포하고, 심의회에 불참한 심의위원에게 심사결과자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정보를 제공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6	2009. 11.26 (목)	김기중	현행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의 사업 참여비율이 극히 저조함.	희망근로사업 연장 재개시 장애인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적정사업 발굴 및 적용 등 장애인 참여비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7	2009. 11.26 (목)	김기중	관내 석면 해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 관련업무 소관 중앙부처인 노동부와 우리구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 및 확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제기 원인이 되고 있음.	2009.9.29. SBS(8시 뉴스 기동취재) 언론보도의 경우 내림동 770-뎀지 주류도매공장'에 관한 문제점 제기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행정조치사항이 구 담당부서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관리의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인 노동부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석면 관련 정보공개를 원활히 할 것.
8	2009. 11.26 (목)	김기중	도림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지만,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십자형 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임.	도림천, 안양천 합류부(문래빗물펌프장 옆) 진출입로와 기 개설된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계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
9	2009. 11.26 (목)	신홍식	1.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업무 현황자료가 상이함. ※ 예) 지하수 관정 현황 · 업무보고서 : 247개소 · 행정사무감사자료 : 253개소 2. 수질검사대상 관정수 상이함. ※ 예) 어떤 제출서류에는 143개소인데 검사실시 계획은 157개소로 기재 3. 보고자료 최종일자 누락	업무 관련 자료제출 시 세심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현황 수치의 정확성과 수치가 어느 시기의 현재 상황임을 명시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0	2009. 11.27 (금)	최미경	지상 전신주에 전선 및 각종 통신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한국전력공사 내부기준에 의한 전신주별 허용수량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전신주 과부하 및 노출선 미정비에 따른 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함.	전선 및 통신케이블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 및 유관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리 개선방안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
11	2009. 11.27 (금)	최미경	노상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주차부스 운영에 있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주차관리원 음용수가 불충분하여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노상주차장 주차부스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설치하고, 음용수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주차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12	2009. 11.27 (금)	송수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유희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야간개방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현재 4개소 52면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림, 도림, 신길, 양평 지역밖에 없음. - 분쟁 발생, 학부모 반대 등의 개방 장애요인 - 건축주의 공사비용 과다청구로 인한 어려움. -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면의 50% 이상이면서 5면 이상 개방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로 옥외주차장만 개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서 이것조차 혜택을 받지 못함. - 결국, 구의원·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장소 확보가 가능하나,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함.	유희공간 야간개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야간개방에 따른 혜택을 적극 검토·발굴하고,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할 것. ※ 사실상 야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변 주차로 인한 2,3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검토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3	2009. 11.27 (금)	송수희	<p>영화관·공연장 시설 안전점검에 있어, 행정직 직원이 전기, 건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안전점검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p> <p>외벽 붕괴 위험 등 건축물 안전점검은 치수방재과 안전관리전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공연장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는 한계가 있음.</p>	<p>CGV영등포 등 공연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년에 최소 한번의 외부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적극 검토·실시할 것.</p>
14	2009. 11.27 (금)	송수희	<p>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에 있어,</p> <p><u>소득지원자금</u> 용자대상 선정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 또는 인적보증 가능한 자로서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곤란하므로, 중산층에 가까운 서민층이 주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대부분 창업 또는 기계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 용자를 받는 경우가 많음.</p> <p>그런데 소득지원자금의 용자한도액은 최대 4천만원이나 4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4천만원을 구청에서 받고 다른 기관을 통해 추가용자를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더없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용자한도액 상향조정이 요구됨.</p> <p>또한 <u>생활안정기금</u> 용자 중 재학생 학자금 등의 경우는 신청자의 실질적 소요액 및 상환능력을 감안한 탄력적인 용자금액 조정 지원이 필요함.</p>	<p>소득지원자금의 용자한도액은 최대 4천만원이나, 한도액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시행하여 창업자 등 실질적 수요자들이 자립 및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p> <p><u>생활안정기금</u>은 2천만원 이하 용자가 가능하나, 학자금(한 학기 등록금) 등은 신청자가 2천만원까지 용자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담당자가 적정 수준을 권하여 용자금액을 하향 조정시킴으로써, 상환 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상담·지원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5	2009. 11.27 (금)	김기중	<p>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하여, 현재 관내 학기중 약 2000여명, 방학중 최대 4,0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협력 식당의 수와 식종이 제한되어 있음.</p> <p>※ 현재 70여 곳의 협력식당이 있으나, 분식점, 중화요리점, 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p>	<p>관내 모범 음식점이나 동주민센터 등과 협조하여 아동급식지원 협력 식당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식종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16	2009. 11.27 (금)	김기중	<p>영등포아트홀이 2009. 2월 ~10월 간 32개 전시·공연을 소화하며 4억 6천여만원의 공연료를 투자하여 약 7천만원의 수입을 올려 약 16%의 공연수입율을 기록하였음.</p> <p>초기 공연시설 수익률로는 타 공연장 대비 적자폭이 양호하다고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수익률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우려됨.</p>	<p>올해 개관한 영등포아트홀이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공연 유치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개관 취지인 서남권 선두 공연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의 수립과 전문 운영기관으로의 위탁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 공연의 유치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사업방안을 강구할 것.</p>
17	2009. 11.27 (금)	박남오	<p>영등포동 569-3 외 4필지 소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1층 평면도상 주차구획 10면 모두 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임.</p>	<p>- 해당 건축물 1층 평면도에 따라 즉시 담장을 철거토록하고, 미시정시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시행 등을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p>- 1회 시정에 한하여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p>
18	2009. 11.27 (금)	박정자	<p>관내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총 15개소(281명)가 운영되고 있으나, 8개소에만 급식비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 나머지 공부방의 아동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전 공부방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및 시비 예산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서울시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급식비 지원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9	2009. 11.27 (금)	박정자	<p>두암 상상어린이공원 공사에 있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대형수목(8주)을 무리하게 이식한 결과 다수 식재목이 고사되어 대체 수목을 추가 식재해야 하는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많고,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원지공원 주민설명회 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p>	<p>두암 상상어린이공원 공사 추진에 있어,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리구청의 관심이 소홀했고, 또한 공사계획 수립단계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하자가 발생한 측면도 있음. 하자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향후 유사한 공사 시행에 있어서도 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우리구가 적극 관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p>
20	2009. 11.27 (금)	신홍식	<p>정책사업 꿈나무 프로젝트는 2009년도 서울시 우수구 평가받은 것으로 이론에 치우치고 실제 운영은 현실적이지 못했으며, 자료가 부실했음. (※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자료 제출) - 관련시설 현황 : 제출자료 36개소 → 실제 42개소 - 소관 관련 단체 용어를 다르게 표기 - 상설기동반 운영이 계획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반원 4명이 전시설(42개소) 월 2회이상 중점 점검 및 월 2회 이상 홍보 실시 계획</p>	<p>감사자료 제출 시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소관부서 지도·감독단체 명칭 용어를 일원화할 것이며, 상설기동반 운영계획 및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1	2009. 11.30 (월)	최미경	<p>1. 2009년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지시하였으나, 현장방문 결과 시정지시 이전 위법상태로 다시 복구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p> <p>2. 이미 음식점,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도 건축과, 주차문화과로 이원화된 업무체제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정지시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시정 이행 후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할 것.</p>
22	2009. 11.30 (월)	송수희	<p>1.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희망근로사업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DB 관리가 미흡함.</p> <p>2. 희망근로, 공공근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상담, 관련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p>	<p>1.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시 기재항목 작성요령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신청서에 의한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것.</p> <p>2. 희망근로, 공공근로, 대체인력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특강 및 면접 대비 교육, 각종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정기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할 것.</p>
23	2009. 11.30 (월)	송수희	<p>1. 청소년독서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림1동, 영등포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 대상 시설로 되어 있음. 현재 도림1동 독서실의 경우 바닥재 등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나, 올해 바닥 등 일부 공사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공사할 경우 새 바닥재 훼손 등에 따른 이중공사로 인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p> <p>2. 영등포동 독서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임.</p>	<p>공사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면 효율적 공사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가 예산 편성이 요구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4	2009. 11.30 (월)	김기중	당산동 디자인 거리 현대해상 사옥 주차장 진입로상 보도에 보도블록형 화강석이 파손되어 보행상 불편을 주고 있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후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것.
25	2009. 11.30 (월)	김종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 차량 중 사실상 견인이 곤란한 차량이 약 30%정도되며, 이러한 경우 견인도 할 수 없으며 주차장 사용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견인을 못하는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여 노상·노외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것.
26	2009. 11.30 (월)	김종태	도시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은 총 8대, 운전기사는 9 명이나 2009년도 차량 1대당 일 견인 건수가 4대로서 차량 1대당 견인 건수가 저조함.	- 현 견인업무량으로는 차량을 일부 줄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운전기사 인원수도 심야시간대 업무 조정으로 인원을 조정하여 차량 및 인건비를 절감할 것. - 견인업무 중 구청으로 견인 요청하는 민원 건은 공단으로 연락하여 공단에서 견인하게 하는 등 공단의 견인업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
27	2009. 11.30 (월)	김종태	공영노상주차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근무시간 외 무료 개방되는 시간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음.	현재 오후 7시까지인 공영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및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시행하여 노상주차장내 불법 영업행위를 억제하고, 세수도 확보토록 할 것.
28	2009. 11.30 (월)	박남오	영등포동3가 7-17 소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식품접객업소 객석으로 무단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차문화과 :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원상회복토록 시정조치할 것. - 위 생 과 : 식품접객업소의 객석 무단 확장에 의한 불법 영업행위를 시정조치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9	2009. 11.30 (월)	박정자	대림동 지역 교차로 주변 빌딩 및 점포 밀집지역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점포 앞 도로상에 다량의 물품을 적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단속 및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 주차문화과 :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하고, 사후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할 것. - 가로경관과 : 점포 앞 도로상 물품 적치행위가 근절되도록 상시 단속 조치 할 것.
30	2009. 11.30 (월)	신홍식	정화조 오수분뇨 관리에 있어, 1.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발생 후 재발급하지 않음. 2. 청소안내서 전체 납부금액 포기되지 않았으며 2년에 회통지서를 보낸 것도 있음. (※ 1년 1회 의무)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서별 상이함. (2008년도 현황 : 구정질문서 자료/행정감사자료가 서로 상이함) 4. 수수료 납부방법(조례 제8조 ; 수수료청구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율 전혀 홍보하고 있지 않음.	1. 허가증 주소란에 영등포 주소로 변경하여 재발급할 것. 2. 수거대상자별 용량을 전수조사하여 사전에 납부금액을 포기하여 인지도록 하며, 정액 납부하므로 거스름돈으로 인한 오해 및 불신이 발생치 않게 할 것. 3. 상황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평소 사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고지서를 발부하여 조례 제 8조에 의거 현장 현금영수를 지양하고 1개월 이내 은행납부방법을 강구하도록 함. 또한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할 것.
31	2009. 11.30 (월)	신홍식	노숙팀 운영 관리에 있어, 1.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 11월 30일 현재 1 명이 1개월 이상(11월 1일~현재) 무단결근하고 있어 상담에 차질이 우려됨. 2. 특별 동절기 대책기간(11.15~익년 3.15)이 이미 15일이 지났음에도 방한복 및 동절모자 지급이 안된 상태임.	신속 정리 해고 후 전문상담에 응하여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또한, 피복 등을 제때에 지급하여 거리 및 전문상담원들의 복지에도 기여토록 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32	2009. 12.1 (화)	최미경	영등포동 2가 94-379 소재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앞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교통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앞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재차 확인한 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할 것. - 또한 근로복지공단 주변 보도 폭이 좁아 구민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보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3	2009. 12.1 (화)	송수희	<p>1.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요구액 보다 삭감되어 계상된 상태이나,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시설에서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 미설치 구간 등 시급성을 요하는 확충대상 편의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급급하게 처리하여 계획적인 설치 지원이 미흡함.</p> <p>2. 구청사 내 계단 난간 핸드레일의 손잡이 폭이 넓은 편으로서 불편하고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 안내표시판의 기능을 저해하므로 핸드레일 교체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에 즉응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장애인 단체 등의 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성 있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 - 구청사 내 핸드레일 폭 규격을 축소·교체하고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표시판을 확충 설치할 것.
34	2009. 12.1 (화)	김기중	2009년 6월 개장한 영일상어린이공원 내 체육기구가 파손된 채 3개월 이상 보수되지 않고 있음.	담당직원에게 확인결과, 설치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나 업체측에서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어 재요청하여 2009년 12월 첫째주 내에 보수하기로 하였다고 함. 재확인하여 기한내 하자보수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35	2009. 12.1 (화)	박정자	대림운동장 농구대 바닥 고무탄성 포장 시공 시 규격 미달(현재 0.6cm미달로 시공)로 인해 포장 부분이 1.2cm 파손된 것으로 보아 시공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조속한 하자 조치가 요구되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농구대 하단 주변 포장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잦은 마찰과 접촉으로 파손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있음.	인조잔디가 품질 불량으로 균열되고 보푸라기가 일어나 옷이나 신발에 달라붙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공 규격 준수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하자 부분은 조속히 보수조치 할 것.
36	2009. 12.1 (화)	박정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 수입계좌 잔액이 329,935,573원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순수잔액은 18,000,000원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예비비 만큼 지출여력이 제한되는바, 이는 보육시설 예산편성 기준 중 예비비 편성 상한비율인 세출예산의 2%를 적용·계상한 데 기인함.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다음연도 이월 예정 잔액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	보육시설 예산편성기준 중 예비비 편성 상한비율을 현행 2%에서 1%로 하향 조정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적극 건의하고, 예비비 및 이월액 최소화를 통한 여유재원을 어린이집 보수비로 사용하는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
37	2009. 12.1 (화)	박정자	대림3동 611번지 구 청소차량 차고지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실외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동 차고지 활용방안에 관하여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녹지공간 조성을 희망하여 집회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청소차량 이전이 완료되면 녹지공간을 확보해 환경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지 활용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구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한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비판적 여론이 있음.	-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먼저 현대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또한 향후 주민 동의에 기초한 확정사업 추진 시 주민들을 대표로 한 공사감독위원회를 소규모 단위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38	2009. 12.1 (화)	윤준용	안양천 갈대 1축구장은 축구 전용 구장임에도 구청이 야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음. 특히 파울볼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이 미비하여 인근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안양천 갈대 1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인근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구도 야구 동호인들을 위해 전문시설을 갖춘 야구장 설치를 적극 검토·추진할 것.
39	2009. 12.1 (화)	윤준용	도로 일정구간의 전면적인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복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도로 굴착공사의 경우 기존 포장 단면 절단 시 공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포장면이 고르지 못한 단층 현상이 보이고, 마감부분 중 아스콘과 도로 측구가 접하는 부분에서 포장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적출됨.	기존 도로 포장면 절단을 수반하는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복구 공정에 대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감사관을 활용·배치하여 복구 과정을 모니터링 및 감사하게 하여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것.
40	2009. 12.2 (수)	송수희	1. 여의도 지역은 노점상 단속 용역예산 특별 배정에도 불구하고 단속 효과가 미흡함. 2. 기타 지역 역시 포장마차 자바라, 손수레 등을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저조함.	야간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에 노점상 영업을 시작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지정해서 집중 단속함으로써 신규 불법영업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하고, 상습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쓸 것.
41	2009. 12.2 (수)	김기중	현재 각 주무과 별로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방법이 상이하여 통일성이 없으며, 일부 건물은 정기 안전점검도 되지 않고 있음.	총괄부서에서 표준 안전점검표를 배부하여 이용, 정기점검하여 관내 공공청사에 적용되게 할 것. 또 해당과 직원으로 하여금 육안 점검 뿐 아니라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전문 안전점검 조치를 강구하고, 비노후 건물의 경우에도 건축과 직원을 통한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42	2009. 12.2 (수)	박남오	영등포역 동부광장 정비사업 공사기간을 2009.7.6~9.8 까지 철도청 및 주민들과의 약속이 되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공원녹지과는 불법 노점상 몇 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가로경관과와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 후 공사 시행토록 할 것.